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상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685 발의연월일: 2025. 6. 10.

발 의 자 : 윤상현 · 김선교 · 김장겸

이인선 • 인요한 • 주호영

윤영석 • 박충권 • 이헌승

조배숙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별세액공제 중 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액과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5조의2에따른 월세액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하고 있음.

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부하는 전·월세 관리비에 대한 세액 공제 특례를 신설하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개정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(안 제61조제1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068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, 같은

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1조제1항 중 "제5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5조의2의 규정"을 "제5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5조의2 및 같은 법 제95조의3의 규정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61조(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	제61조(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		
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	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		
방법 등) ① <u>제59조의4제1항부</u>	방법 등) ① <u>제59</u> 조의4제1항부		
터 제3항까지 및 「조세특례제	터 제3항까지, 「조세특례제한		
한법」 제95조의2의 규정에 따	법」 제95조의2 및 같은 법 제		
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	95조의3의 규정		
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대			
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에			
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			
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			
없는 것으로 한다.			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		